

제조소[]
위험물 저장소[] 용도폐지신고서
취급소[]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5일
설치자	성명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
설치장소				
제조소등의 구분				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
설치허가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	년	월	일 / 제	호
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	년	월	일 / 제	호
위험물의 유별, 품명(지정수량), 최대수량	지정수량의 배수			배
폐지연월일	년	월	일	
폐지사유 및 방법				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

(전화번호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

작성방법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성명 포함)을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